

고 시

선	기관 의 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24-26호 : 202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중구 추가경정 사업예산 고시 2
- 공 고
제2024-455호 :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3
제2024-457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등록 공고 13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26호

202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중구 추가경정 사업예산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중구 추가경정 사업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2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2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중구 추가경정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감액(A-B)	증감률
	추경예산(A)	구성비	기정예산(B)	구성비		
계	582,066,290	100.00%	582,066,290	100.00%	0	0.00%
일 반 회 계	530,458,901	91.13%	530,458,901	91.13%	0	0.00%
특 별 회 계	51,607,389	8.87%	51,607,389	8.87%	0	0.00%
의 료 급 여	304,300	0.05%	304,300	0.05%	0	0.00%
주 차 장	51,303,089	8.81%	51,303,089	8.81%	0	0.00%

※ 내부유보금(일반회계, 593,857천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예산규모 변동 없음.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55호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 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0호(2016.10.6.)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제2021-231호(2021.5.20.)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I.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구 수표동 35-13번지 일원	42,641.6	-	42,64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0호(2016.10.6.)

2. 정비지구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지구명	위 치	시행면적(㎡)	구 분		비 고
				획지면적(㎡)	정비기반시설(㎡)	
기 정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원	1,976.0	1,619.5	356.5	-

II.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976.0	-	1,976.0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356.5	-	356.5	18.0	-
	도로	112.2	-	112.2	5.7	-
	공원	244.3	-	244.3	12.3	-
획지		1,619.5	-	1,619.5	82.0	-

2.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976.0	-	1,976.0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976.0	-	1,976.0	100.0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①	방화지구	-	수표동 27-1 일원	55,151 (1,976.0)	-	-	1973.8.1. (건고시 제317호)	집단

주) ()는 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 내 편입면적임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신설

가. 토지등소유자별 권리가액

(단위 : 원)

구분	총전토지등의 추산액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B)	비용부담액(C)	추정 권리가액(A+B+C)	분담률(%)	
	금액(A)	비율(%)					
합 계	90,725,470,680	100.0	21,440,625,781	106,796,924,580	218,963,021,041	100.0	
토 지 등 소 유 자	을지로3가5-4 외 17필지	89,567,005,680	98.72	21,166,852,447	-	110,733,858,127	50.57
	을지로3가5-24	1,158,465,000	1.28	273,773,334	-	1,432,238,334	0.65
	사업시행자	-	-	-	106,796,924,580	106,796,924,580	48.78

주) 상기 권리가액은 추산액으로서 향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관리처분변경계획 수립 시 종후자산(신축건축물)의 감정평가에 따라 확정(변경) 예정이며 종전자산은 최초 사업계획승인인가 시 기평가 완료

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구분	추정 권리가액	분양 예정가(원/㎡)		개별 분담금 산정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합 계	218,963,021,041	11,515,152	11,515,152	토지등소유자별 권리가액 - (시설별 분양 예정가(원/㎡) × 분양받는 면적(㎡))	
토지등 소유 자	엘지로3가5-4 외 17필지				110,733,858,127
	엘지로3가5-24				1,432,238,334
사업시행자	106,796,924,580				

주) 분양예정가는 추후 사업시행변경인가 이후 종후자산 감정평가에 의해 확정(변경)될 예정이며, 분담금은 토지등소유자별 권리가액 및 분양신청 물건에 따라 산정하며 관리처분변경계획 수립시 확정(변경) 예정

다.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산출근거

구분	금 액(원)	비 고
총금액	218,963,021,041	• 종전 관리처분시 종후감정평가액 동일단가적용
대지비	112,166,096,461	• 종전 관리처분시 종후감정평가액 동일단가적용
공사비	103,257,000,000	• 종전 관리처분시 종후감정평가액 동일단가적용
대지조성비	3,539,924,580	• 명도비용 등
분양예정 대지평가액	115,706,021,041	• 대지비+대지조성비
종전토지등의 추산액(A)	90,725,470,680	• 2023년4월 구청신청 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
분양예정 대지평가차액(B)	21,440,625,781	• 분양예정 대지평가액-대지조성비-종전토지등의 추산액
비용부담액(C)	106,796,924,580	• 공사비+대지조성비
분담금 추산액	218,963,021,041	• A+B+C

주) 상기 비용은 추산액으로서 향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따른 건축계획, 사업규약, 자금계획 및 관리처분 변경계획 수립 시 종후자산 감정평가에 따라 확정(변경) 예정

4.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3	3	13 (1.5)	집산 도로	177 (41.7)	엘지로3가 5-4	입정동 262	일반도로	공공청사	2010.8.26. (서고제306호)	엘지로 11길
변경	중로	3	3	9.5~13 (1.5)	집산 도로	177 (41.7)	엘지로3가 5-4	입정동 262	일반도로	공공청사	2010.8.26. (서고제306호)	엘지로 11길
기정	소로	1	b	10 (1.0)	집산 도로	307 (36.2)	엘지로3가 95-5	수표동 56-11	일반도로	-	2005.8.25. (서고제255호)	충무로 9길

■ 변경사유 : 중로3-3호선은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결정(변경)(서고 제2021-697호)에 따라 도로 폭원의 일부 변경이 반영된 사항임

주) ()는 엘지로3가구역 제9지구 내 편입면적임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역사공원	엘지로2가 101-43 일원	1,551.0 (244.3)	-	1,551.0 (244.3)	2016.10.6. (서고 제2016-310호)	-

주) ()는 엘지로3가구역 제9지구 내 편입면적임

5.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 계획 : 변경없음

가. 정비기반시설 부담 계획

구분	지구명	사행 면적 (㎡)	대지 면적 (㎡)	정비기반 시설면적 (㎡)	계획기반 시설내 기존공공용지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	순부담 면적 (㎡)	순부담율 (%)	비 고
기정	엘지로3가구역 제9지구	1,976.0	1,619.5	356.5	-	-	356.5	18.0	-

주) 순부담률 = 순부담면적 / (사행면적 -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공공용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 100

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확보) 계획

1)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관리청으로 무상 귀속)

기 정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제9지구	소 계			356.5	
	을지로 3가	5-1		도로	26.7
		5-2			11.5
		5-3			3.7
		5-4			25.1
		5-18			9.0
		5-19			8.6
		5-21			15.1
		5-31			4.4
		5-32			3.0
	5-33		5.1		
	을지로 2가	공동 부담	101-21	공원	109.1
			101-43		135.2

주) 필지의 일부가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되는 면적은 CAD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사업시행시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면적으로 재산정하여야 함

2) 국공유지 매입대상

구 분	위 치		지 목	면 적 (㎡)		관 리 청	비 고
				공부(공유지분)	편입(공유지분)		
9지구	을지로3가	5-24	도	23.1	23.1	국(국토교통부)	

주) 을지로3가 5-24번지는 지목상 도로이나,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됨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7.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후	
기정	을지로3가 구역 제9지구	1,976.0	-	1,619.5	을지로3가 5-1번지 일원	17	-	-	17	-	-

2) 건축시설계획 : 변경

구분	지 구 구 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을지로 3가구역	1,976.0	-	1,619.5	을지로3가 5-1 일원	주거, 숙박	60 이하	1,028 이하	70 이하																													
변경	제9지구					업무	60 이하	1,077 이하	77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상업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가능) (서고 제2019-343호) 주택공급계획 : 108세대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비율 : 100% - 공공주택 전체 세대수의 60%이상 전용 40㎡이하 확보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일 것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전용면적</th> <th>세대수</th> <th>비율</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일반분양</td> <td>40㎡이하</td> <td>31세대</td> <td>28.70%</td> <td></td> </tr> <tr> <td>50㎡이하</td> <td>72세대</td> <td>66.67%</td> <td></td> </tr> <tr> <td rowspan="2">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td> <td>40㎡이하</td> <td>5세대</td> <td>4.63%</td> <td rowspan="2">임대주택</td> </tr> <tr> <td>50㎡이하</td> <td>-</td> <td>-</td> </tr> <tr> <td colspan="2">합 계</td> <td>108세대</td> <td>100.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비고	일반분양	40㎡이하	31세대	28.70%		50㎡이하	72세대	66.67%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40㎡이하	5세대	4.63%	임대주택	50㎡이하	-	-	합 계		108세대	100.0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비고																																
일반분양	40㎡이하	31세대	28.70%																																			
	50㎡이하	72세대	66.67%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40㎡이하	5세대	4.63%	임대주택																																		
	50㎡이하	-	-																																			
합 계		108세대	100.0																																			
변경	○ 해당없음																																					
건축물 건폐율 완화에 관한 계획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폐율 : 60% 이하 - 도심부 내 3,000㎡ 미만의 소규모 대지로 50% 이하 의무기준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 완화 가능 																																				
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적률 : ① + ② + ③ = 1,028%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공공기여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량 : 200%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목적</th> <th>인센티브 대상</th> <th>요건</th> <th>인센티브</th> <th>인센티브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친환경 개발 (의무)</td> <td>녹색건축물 인증</td> <td>그린1등급(최우수)</td> <td rowspan="3">100%</td> <td rowspan="3">200% 적용</td> </tr> <tr> <td>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td> <td>240(kWh/㎡·y)미만</td> </tr> <tr> <td>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td> <td>7%이상(주거), 11%이상(비주거)</td> </tr> <tr> <td>생활SOC 문화 인프라</td> <td>생활SOC,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td> <td>공연법 등록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록대상, 영화진흥법 등록대상</td> <td>40%</td> <td></td> </tr> <tr> <td rowspan="2">보행가로 활성화</td> <td>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td> <td>재생관리지침에 따라 가로활성화용도 도입 시</td> <td>30%</td> <td></td> </tr> <tr> <td>공공보행통로 등</td> <td>재생관리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시</td> <td>30%</td> <td></td> </tr> </tbody> </table>									목적	인센티브 대상	요건	인센티브	인센티브량	친환경 개발 (의무)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1등급(최우수)	100%	200% 적용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240(kWh/㎡·y)미만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7%이상(주거), 11%이상(비주거)	생활SOC 문화 인프라	생활SOC,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공연법 등록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록대상, 영화진흥법 등록대상	40%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가로활성화용도 도입 시	30%		공공보행통로 등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시	30%	
		목적	인센티브 대상	요건	인센티브	인센티브량																																
친환경 개발 (의무)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1등급(최우수)	100%	200% 적용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240(kWh/㎡·y)미만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7%이상(주거), 11%이상(비주거)																																				
생활SOC 문화 인프라	생활SOC,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공연법 등록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록대상, 영화진흥법 등록대상	40%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가로활성화용도 도입 시	30%																																			
	공공보행통로 등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시	30%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228.93% <table border="1"> <tr> <td>공공시설</td> <td>산식 = 1.3α × (기준용적률 + 공공기여시설 인센티브) = 1.3 × (356.5㎡/1,619.5㎡) × (600% + 200%) = 228.93% ※ α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td> </tr> </table>									공공시설	산식 = 1.3α × (기준용적률 + 공공기여시설 인센티브) = 1.3 × (356.5㎡/1,619.5㎡) × (600% + 200%) = 228.93% ※ α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공공시설	산식 = 1.3α × (기준용적률 + 공공기여시설 인센티브) = 1.3 × (356.5㎡/1,619.5㎡) × (600% + 200%) = 228.93% ※ α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변경	○ 용적률 : ① + ② + ③ = 1,077%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210% → 200% 적용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계획유도	친환경	전기차충전소 설치	•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적인무사항 1/2이상 초과설치 시	정량부여 (최대 20%)	20%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 3개 항목 모두 법령에 따른 기준 초과 시	정량부여 (최대 30%)	30%			
			도시경계 활성화	지역별 도시경계활성화 유도 용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도입 시	정률부여 (최대 100%)	100%			
			보행가로 활성화	공공보행통로 등	•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시	정률부여 (최대 30%)	30%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또는 지하철 출입구 이전 시	정률부여 (최대 50%)	10%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 시	정량부여 (최대 20%)	20%				
		③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277.9% → 277% 적용 -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228.9% - 공개공지 초과조성에 따른 용적률 완화 : 49.0%								
		구분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완화량					
공공시설부지 제공 (도로 및 공원)	\bullet 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a)$ $(a = \text{부담면적} \div \text{대지면적})$	$800.0\% \times (1.3 \times 0.22013)$ $(a = 356.5 \div 1,619.5)$	228.9%	277.9%						
공개공지 초과조성	\bullet 허용용적률 \times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면적 \div 대지면적)	$800.0\% \times [(212.6 - 113.4) \div 1,619.5]$	49.0%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신설

○ 기준높이 : 70m	
○ 최고높이 : ① + ② = 77.2m → 77m 이하 적용	
① 개방형 녹지율에 따른 높이 관리 : 75.1m	
개방형녹지	\bullet 산식 = 적정건폐율 50% \times (기준높이+20m) \div (80%-개방형녹지율) $= 50\% \times (70\text{m} + 20\text{m}) \div (80\% - 20.1\%) = 75.1\text{m}$
②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량 : 2.1m	
공개공지 초과조성	\bullet 산식 = 기준높이 \times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times 1/2) \div 대지면적} $= \text{기준높이}(70\text{m}) \times \{(99.2\text{m}^2 \times 1/2) \div \text{대지면적}(1,619.5\text{m}^2)\} = 2.1\text{m}$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정

○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한계선은 아래와 같이 지정,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 단, 제9지구의 제8지구 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폭5m)은 공공보행통로(4m)로 조성		
구분	건축선 지정내용	비고
제9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로2-3(30m)변 저층부 건축지정선(폭3m) 지정 대로2-3(30m)변 고층부 벽면한계선(폭6m) 지정 중로3-3(13m)변 건축한계선(폭2m) 지정 소로1-b(10m)변 건축한계선(폭2m) 지정 	도면참고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변경	○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한계선은 아래와 같이 지정,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 단, 제9지구의 제8지구 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폭5m)은 공공보행통로(4m)로 조성							
		구분	건축선 지정내용						비고
		제9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로2-3(30m)변 건축지정선(폭3m) 지정 중로3-3(13m)변 건축한계선(폭2m) 지정 소로1-b(10m)변 건축한계선(폭2m) 지정 						도면참고
※ 간선도로변 연속적인 가로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로2-3(30m)변 저층부 건축지정선(폭3m)을 건축지정선(폭3m)으로 변경하고 고층부 벽면한계선(폭6m) 폐지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신설)	기타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대지 내 전면공지는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계성 증진 및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대상지 동측변 공개공지 지정						
		○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구 서측 공공보행통로(4m) 지정 - 연결한 제8지구와 연계하여 조성하고 24시간 일반에 개방							
		○ 지구 동측 : 공개공지와 연계한 개방형녹지 조성 ○ 개방형녹지율 : 30% 미만 - 도심부 내 3,000㎡ 미만의 소규모 대지로 개방형녹지 의무기준(30% 이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 완화 가능 ※ 개방형녹지는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심의기준'에 따르며, 상세계획은 '녹지생태도심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조성할 것							

■ 변경사유 : 도심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시설을 주용도를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규모 대지에 대한 건폐율 및 개방형녹지를 완화, 개방형녹지 확보 등에 따른 용적률·높이 완화 적용

9. 정비계획 결정(변경)(안)도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 동 정비계획(안)은 미확정된 계획으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IV. 기 타

- 1) 공람기간 : 2024. 4. 24. ~ 2024. 5. 24.(31일간)
-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72)
- 3)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57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신조 직인 내역

- 공인명 : 서울시중구고향사랑기금 출납원인
- 용 도 : 회계관계공무원 전용 (서울특별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 규 격 : 1.8cm × 1.8cm
- 수 량 : 1조
- 문 양 : 한글전서체
- 사용개시일 : 2024. 4. 24.

2. 신조 공인내역

공인내역	신조 공인명	인영	재질	관수부서
신조교부	서울시중구 고향사랑기금 출납원인		목(木)	자치행정과